

제주지역의 경우만 해도 1981년 일간 신문 1곳과 방송 2곳, 통신 1곳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일간신문 4곳, 방송국 5곳, 통신 2곳, 인터넷신문 2곳 등으로 늘었다. 언론매체의 숫적 증가, 언론수단의 다양화, 인터넷매체의 등장, 정보제공수단의 변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환경은 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언론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제도를 가지고는 달라진 언론환경에 부응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에 15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중재부의 경우는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문을 열었다.

II.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

언론중재위는 그동안 언론분쟁 해결기관으로서 또는 언론중재와 반론권 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한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 수요는 언론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회가 다양화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와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피해나 분쟁의 심각성도 더 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가 하면 독자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그 파급효과가 어떤 것보다도 크며, 회복하기가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책임에 대한 요구는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으며, 언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그 영향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월 1일에 제정되고,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정간물법과 비교해서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포괄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단일화 했다.
- △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해서 실질적 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기능을 명시했다.
- △ 인터넷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 △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 반론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이도 정정보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 △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에 대한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 △ 중재위원의 숫자를 80인 이내에서 90인 이내로 확대했다.

III. 언론중재법의 신설 제도

1.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조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은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고,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